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47
----------	-------

발의연월일 : 2023. 9. 19.

발 의 자 : 정점식 · 이태규 · 서병수
장동혁 · 유상범 · 조수진
조경태 · 전주혜 · 정경희
金炳旭 · 박형수 · 권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

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u><신 설></u>	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u>
<u>② (생 략)</u> <u><신 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관한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u>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
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
죄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
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참고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
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
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
고하여야 한다.